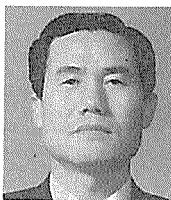


## 건강증진법 따라 미성년자 흡연을 감소되길



박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것이 '95. 6. 26자이니 어느덧 6개월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 교직생활을 제외하면 29년여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처럼 별다른 부담도 없이 가벼운 기분으로 보건정책과에 부임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인사를 드렸으나, 거두절미하고 국민건강증진법령의 제정과 “한·미간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양해록”의 수정협상이 긴급한 당면과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실정과 문제점, 사업의 내용 등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이 '95. 1. 5자 제정·공포되어 '95. 9. 1부터 시

행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이 법에서 위임된 제조담배에 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금연을 위한 조치가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규정되려면 미국이 공산품, 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한국시장에 개방압력을 행사할 때인 1988년도에 외산담배가 처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체결된 양해록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담당사무관의 브리핑 내용이었다.

법령의 시행일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양해록 때문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위기가 부산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관계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이 73%로서 세계 1위라는 사실과 흡연하는 청소년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병자년 새해는 법령의 정상적인 집행과 함께  
이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성인 및 미성년자의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설명에 더욱 답답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보건정책과의 근무로 나는 최근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담배양해록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조약은 아니나 국가간의 약속으로써, 현행 양해록의 내용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담배의 광고·판촉활동 제한조항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고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간의 약속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그 당시의 검토결과로는 '94년 9월부터 외무부, 재정경제원과 함께 많은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4차례나 협상에 임하여 왔지만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까지 2개월동안 양해록의 불평등 조항을 수정하는 협상을 끝내고 하위법령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것이 과장인 나의 임무였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령이 담배의 광고와 판촉활동의 규제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국제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 이후 2개월의 기간은 29년간의 공무원생활 중에서 가장 바쁜 나날이었으며 잊지 못할 사건의 연속이었다.두번이나 워싱

턴을 방문하여 며칠밤을 새우면서 업무과악과 함께 협상전략을 세우던 일, 무조건 시간만 끌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미국의 대표들, 그런 상황에서 '95. 8. 25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짐을 어떻게 챙겼는지도 모른 채 사무실로 달려와 5일 후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짓던 날, 우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무난하게 일을 끝맺고 서로 서로 고생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즐거워했던 일들이 생생하다.

지금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96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낸 일들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측면지원과 언론 등 국민여론에 많은 힘을 얻은 덕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보건정책과장으로 병자년 새해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법령의 정상적인 집행과 함께 이것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물론 학생 등 미성년자의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큰 바람이 없을 것 같다. 병자년에는 흡연율의 감소와 절주를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 속으로 다짐해 보면서… ㉔